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목적

가.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기관 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건과 내용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는 계약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가.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와의 계약도 유효하다. 단 법적 권한이 없는 보호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 전원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기타 기관 이용에 필요한 서류

다.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건강검진결과서 등) 각 1부

라. 계약을 체결할 때 기관은 이용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시간,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공, 본인부담금, 배상책임보험,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급여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용자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자동 종료되며,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가. 일반대상자 :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한다.

나.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서 정한 감경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의료기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부담이용료 전액 면제

2) 60% 감경 : 월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3) 40% 감경 : 월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⑥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⑦ 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며, 자세한 금액은 [월 이용료]와 같다.

⑧ 비급여 항목 및 기타 비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월 이용료]의 비급여 항목 세부 기준에 따른다.

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계약의 해제

가. 계약 해제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지를 통지한 때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6)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 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제가항 5), 7)의 경우 기관의 해지통지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해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⑩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월 이용료]

2025 이용료 및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주간보호)

■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2025.01.01.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2025.01.01.기준)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1등급	40,650	54,490	67,770	74,660	80,060
2등급	37,630	50,470	62,780	69,160	74,170
3등급	34,740	46,590	57,960	63,900	68,520
4등급	33,160	45,000	56,380	62,290	66,930
5등급	31,580	43,400	54,780	60,710	65,350
인지지원등급	31,580	43,400	54,780	54,780	54,78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6% 또는 9%

■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및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세부기준

- ①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및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이며 점심과 저녁으로 구성됨.
- ②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하며,
손·발톱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주·야간보호의 세부기준
 -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하면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	금액
식재료비(1일 1회)	1식 X 3,000원
간식(1일 1회)	1회 X 1,000원